

심사보고서

○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9
----------	-----

2015. 12. 15.(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이 숙 애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15년 11월 23일

다. 회부일자: 2015년 11월 24일

라. 상정일자: 2015년 12월 04일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숙애 의원)

가. 제안이유

「진로교육법」에 따라 진로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지원체계 확립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진로 의식함양과 진로준비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교육시책 마련과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 2)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3) 진로전담교사 및 진로전담교사의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4)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 5) 도교육청 및 지역 진로교육지원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 6) 충청북도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안 제12조)
- 7) 지역별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8)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9) 지방자치단체, 대학, 진로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반기환)

- 본 제정조례안은 「진로교육법」 제5조에 근거하여 도내 학생의 올바른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진로교육 지원 체계 확립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우리 사회에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문제의 심각성이 심화되고 해결 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큰 현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과정 안에서 진로탐색과 진로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진로교육

확립과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본 조례안 제정은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교육시책 마련과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한 것은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진로교육 체계화와 적극적인 시행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되며,
- 제5조에 진로전담교사 및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현재 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진로전담교사 등 전담인력 배치 확대 효과를 높이고,
-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고, 진로 탐색을 위한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 확립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정안 제8조에서부터 제13조까지는 도교육청 및 지역별로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진로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와 각 지역 간에 지원체계와 역할, 연계체계를 명료화하고,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협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진로교육 지원체계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진로교육 센터와 진로교육협의회가 진로교육 진흥에 실제적인 실효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이 시행규칙에서 세심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충청북도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진로교육 지원체계 확립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5. “진로수업”이란 학교에서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하여 교사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진로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를 돕는 활동을 말한다.
6. “진로전담교사”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진로진학상담’ 과목의 자격을 취득한 교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교육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진로교육 진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2.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
3. 진로교육 교원 연수 및 학부모 진로교육
4. 진로교육 운영 실태 평가
5.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6.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진로교육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진로전담교사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각 급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 급 학교에 진로전담교사의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하 ‘전문 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진로교사 배치 기준과 전문 인력의 자격 및 배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

제6조(진로 심리검사) 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진로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진로상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원 할 수 있는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진로상담 내용이나 결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의 진로진학 지도 등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은 후 자료를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담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도교육청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도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충청북도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로서 진로교육지원 정책 연구·개발 및 지원 종합관리
2. 진로직업체험기관 발굴, 진로교육 관련 전문인력풀 구축
3.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콘텐츠 개발 및 운영·보급지원
5. 진로·적성·성격검사 및 진로 상담 운영·지원
6. 진로교육담당 교직원 등의 교육 및 연수
7. 진로교육 운영 실태 평가
8. 지역센터 운영 협의 및 조정
9. 진로교육 컨설팅
10. 진로교육 관련 타 시·도와의 교류·협력 및 정보 수집
11.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장은 지역 센터가 도 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 및 학교 특성에 적합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콘텐츠 개발·활용지원, 정보제공, 진로관련 각종 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지원 등 지역 내 진로교육을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지역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총괄 관리
2.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3. 지역사회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4. 학교와 진로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5.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7.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10조(충청북도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효율적 운영과 진흥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충청북도 진로교육협의회” (이하 “도협의회” 라 한다) 를 구성·운영한다.

② 도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공무원
2. 진로교육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단체, 학부모 등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도협의회 기능) 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대한 검토 및 자문
2. 제8조제2항의 도 센터 업무의 실효성 있는 시행 지원
3. 제9조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과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도협의회 회의) ① 도협의회 회의는 연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역별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① 교육장은 도협의회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 지역 진로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학부모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진로교육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각 지역의 진로교육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제14조(예산지원)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각 지방자치단체, 대학, 진로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협력체계를 통하여 진로체험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개발·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진로교육 진흥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진로교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5. “수업“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수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진로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진로교육 현황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결과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초·중등학교의 진로교육

제8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학생의 발달 단계 및 학교의 종류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진로전담교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이하 “진로전담교사“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진로전담교사는 해당 담당교사와 협의를 거쳐 수업시간에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로상담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④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진로심리검사) 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에 관한 심리검사(이하 “진로심리검사”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심리검사의 운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진로상담) 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에 관하여 해당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수업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①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대학의 진로교육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진로교육 지원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2. 진로정보망 구축·운영
3. 진로심리검사 개발
4. 진로상담 지원
5.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6.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7. 진로전담교사 교육
8.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9.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진로교육협의회) ① 교육감은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진로교육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보호자 등의 참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보호자,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에 참여한 보호자 등에게 진로교육 설명회·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진로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시·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시·도의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시·도 간 진로교육 격차 완화 등을 위하여 시·도 교육청의 진로교육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2조(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① 「교원자격검정령」(이하 “검정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의 장(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이 교원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4.9.3., 2006.4.12.>
- ②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과 검정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의 정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6.19.>
- ③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2와 같다.

비용 추계서

1. 비용추계내용

○ 재정수반요인

·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제9조, 제10조에 따른 예산 추계

2. 비용추계

-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이 시행되면 301,6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매년 확대 예정)

구분 \ 연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지역 진로교육센터 운영비	224,000천원	300,000천원	400,000천원	500,000천원	600,000천원
진로교육협의회		1,600천원	1,600천원	1,600천원	1,600천원
합 계	224,000천원	301,600원	401,600천원	501,600천원	601,600천원

3.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기초자료 및 세부내역

- 진로교육지원센터(지역센터): 224,000천원
 - 지역협력체제 운영 : 8,000천원
 -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 216,000천원
- 진로교육협의회(연2회 이상)
 - 위원회 참석수당: 600천원 × 2회 = 1,200천원
 - 위원회 협의회: 200천원 × 2회 = 400천원